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7. 7.(수) 10:0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2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제 오늘 회의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안·정책관리팀장님, 우리 회의가 공개·비공개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법과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경우 또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밀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감사·인사에 대한 사항,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비공개로 해야 하는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사정이 그러함에도 오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돌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 (2021-28-087)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석 행정법무담당관

-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 임원선임계획을 <별지>와 같이 정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46조제3항에 의한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방문진 이사·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13조제2항에 의한 EBS 사장·감사·이사 임명을 위한 선임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붙임>자료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안)와 관련 규정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안)입니다. 선임대상 임원입니다. KBS 이사, 방문진 이사·감사, EBS 이사·사장·감사입니다. KBS·방문진 이사회 이사 선임

방안입니다. KBS 이사 방송법 제46조제3항에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문진 이사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제4항에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방송의 전문성'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 및 성별, 직능별 대표성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의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정보의 인터넷 공개 및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임 방안입니다. <1> 후보자 모집입니다.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후보자탈 공개 모집하고, 공모방법은 홈페이지 공지 및 보도자료 배포 하고, 접수기간은 14일간으로 7월 7일부터 7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지원서, 결격사유 확인서, 최종 학력증명서 등입니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 확보를 위해 자천 및 타천 방식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KBS·방문진·EBS 이사는 중복 응모가 불가능하여 원활한 심사업무 등을 위해 타천의 경우 피추천인과 협의 후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3쪽입니다. 후보자 정보 공개 및 국민의견 수렴절차입니다. 국민의견 수렴용 지원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원서에는 경력사항, 지원동기, 임명 시 업무 수행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후보자에 대해 제출된 국민의견은 취합하여 후보자 선정에 활용 됩니다. 후보자 선정입니다.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방송에 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아래 박스에 열거된 방송법 제48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4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 등을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는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원자에 대한 법적 결격사유 확인 등 기존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새롭게 도입한 것입니다. <4> 방송통신 추천 또는 임명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합니다. 5쪽입니다. EBS 사장·이사 선임 방안입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EBS 사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2항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EBS 이사입니다. 교육부장관,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 제 3항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기본 원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선임 방안입니다. 후보자 모집은 절차적 투명성 등 확보를 위해 자천·타천 방식으로 공개모 집하고 KBS·방문진 이사와 달리 EBS 이사는 8월 초순 이후에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사장은 임기가 '22년 3월 7일까지이므로 추후에 선임일정을 마련하여, 공모방식은 KBS·방문진 이사와 후보자 모집 절차에 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후보자 정보 공개 및 국민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국민의견 수렴용 지원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원서에는 경력사항, 지원동기, 임명 시 업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6쪽입니다. 후보자에 대해 제출된 국민의견은 취합하여 후보자 선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선정입니다.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방문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하고 한국교육공사법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임명동의 및 임명 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EBS 사장 임명동의 및 EBS 이사를 임명합 니다. 방문진·EBS 감사 선임 방안입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제5항 및 한국교육공사법 제9조제3항에 의거 방문진 및 EBS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선임방안입니다. 공모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협의를 거쳐 의결을 통해 임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모집공고안과 내부용 지원서, 외부용 지원서 관련 규정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어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노조에서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 **김기석 행정법무담당관**

- 위원장님 보고 들어갔다가 듣고서 차후에 확인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성명서에 보면 KBS 이사진, 방문진 이사진, EBS 이사진을 공모하는 과정에 혹시 우리가 비밀리에 하는 것이 있습니까?

○ **김동철 기획조정관**

- 이사는 지금 보고드린 바대로 공모를 통해서 다 공개하는 절차에 따라서 선임하고, 비밀리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데 이 성명서에는 마치 방통위가 비밀리에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KBS 노동조합과 통화해 봤습니까?

○ **김동철 기획조정관**

- 그런 적은 없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성명서를 냈지요?

○ **김동철 기획조정관**

- 그 내막이 어떻게 됐든 그런 성명서를 내게 되었는지 사무처에서는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렇다면 KBS 노동조합에 “우리는 비밀리에 할 이유가 없다. 공개적으로 한다. 당신들 이 성명서 철회하라”라고 요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근거 없이 정부부처를 비방하고 지시합니까? 무슨 근거로.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래라 저래라 한 일이기 때문에 그저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식으로 문제제기하고, 그쪽에서 성명서를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았다’든지 ‘우리가

이야기한 비밀이란 무엇을 이야기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우리 절차를 알려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행법에 따라 행정부처가 해야 할 일을 그 절차에 따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KBS가 자신들의 지배구조에 관해서 논의하는 방통위를 향해 비밀리에 하지 말라고 근거도 없는 비난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일을 주관해서 담당하는 사무처에서 조기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저희 상임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석 행정법무담당관

- 방송정책국과 협의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아니, 한번 알아볼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 김기석 행정법무담당관

- 예.

○ 김동철 기획조정관

- 오늘 회의가 끝나면 기자브리핑을 이 문제에 대해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더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방송정책국장이 계시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성명서 나온 것을 보고 KBS 노조 쪽에 이야기해서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분명히 수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처음에 ‘비밀리에’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수정해서 냈는데 여전히 제가 볼 때 부족해서 다시 수정을 요구했는데 더 이상 수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래서 ‘비밀리에’는 공모를 공개적으로 하라는 쪽으로 다시 바뀌어서 성명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처음에 성명서 낸 것과 수정해서 냈다면 수정된 내용을 위원들에게 공표해 주시고, 그 내용

중 비단 KBS 노조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에서 또는 언론단체에서 KBS 이사 공모 문제에 대해 요청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요청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대변인실과 협조해서 그것이 또 언론에 재생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즉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적됐던 내용처럼 밀실에서 야합의 형태로 이사를 공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노력을 이것뿐만 아니라 방통위와 관련된 사실상 가짜뉴스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시민사회단체나 노조가 어떤 주장이나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수정된 것이 그 정도입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모두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의안·정책관리팀장을 통해 재차 확인한 것도 회의공개 여부에 대해 밖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최초 성명서가 나오고 나서 방송정책국장이나 담당자들이 KBS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논의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이후 처리절차는 저에게 맡겨 주시지요. 어느 수준으로 이야기해야 할지까지 여기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본안으로 들어가시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그것은 아니고, 여하튼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그동안 2018년도에 이 프로세스가 다 공개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공영방송 리더십 공모를 비밀리에 논의하는 것을 당장 멈춰라”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고, 여하튼 이 문제는 조기 처리해 주십시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맡기겠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신력 있는 결정을 내리고, 또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KBS 노조가 벌써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응하지 않고 제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이번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사실상 진전이 없습니다. 당장 KBS 이사 등 공영방송 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 위원회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뉴스통신진흥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해서 사실상 표류하고 있고, 연합뉴스에서는 굉장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주어진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회에 마저 구성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방송 시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방통위가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두 공개로 하고 있고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를 뿌리는 그런 식의 발표는 공영방송의 구성원들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이 직접 임원 선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확장하고자 본 위원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영방송 이사들이 특정 정파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널리 선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 원안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최근에 제기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회는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방송사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특히 최근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공영방송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구성될 이사들의 권한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청렴하며 정치적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지식과 전문성 또한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적합한 자격을 갖춘 우리 사회의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번 공모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원안에 동의하며, 사무처는 이번 공모 절차가 차질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사·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와 함께 소외계층, 지역소식, 고품격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요구받고 있는 반면에 OTT 활성화 등으로 인한 수익 감소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 하에서도 공정하고 다양한 방송 실시라는 다소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공영방송 임원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공영방송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춘 검증과정이 필요한데 2018년 공영방송 임원 선정 당시 후보자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다만, 접수된 의견과 반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진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는 부분적인 비판도 있었습니다. 올해 선임과정에서는 방송통신위원들이 직접 후보자 면접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과 임원으로서 자격이나 책무 수행 의지 등을 확인하고 사후에는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다 신중하게 임원을 선임하고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절차를 보완하였으므로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아직 완료되지 못했지만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등 그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번 선임계획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 기간이나 인터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임원들의 잔여 임기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영방송사의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빈틈없이 작성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으나 강조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도 각종 법률안 형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공영방송의 독립성·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를 기초로 해서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임기만료 시점이 KBS, 방문진, EBS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들이 국민들께 약속드린 임원 선임 과정에 있어서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절차적 투명성을 대폭 확대하는 이런 방향의 큰 원칙을 가지고 이번 공모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점은 접수된 응모자들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께 공개하고 공개된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질문사항들을 접수해서 면접 과정과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 피드백해 드리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위원회의 노력은 현행 법·제도의 틀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1-28-089)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주)삼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사가 소유한 (주)울산방송 주식이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게 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상태를 해소하는 등 방송법 제8조제3항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 (주)호반건설에 대하여 (주)광주방송의 최대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결정할 때까지 방송법 제8조제3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유예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주)호반건설 및 (주)삼라에 대해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의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2021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 및 SM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으며, 5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호반건설 및 (주)삼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우리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 소유제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위 2개 회사에 하였고, 5월 21일 우리 위원회는 (주)광주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지난 6월 10일 지상파방송사 소유제한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접수를 하였습니다. 피심인입니다. (주)호반건설은 “호반건설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방송법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광주방송의 주식을 39.59%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액출자자이며, 피심인 (주)삼라는 “SM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울산방송의 주식을 3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액출자자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관련 규정입니다. 방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입니다. (주)호반건설 및 그 특수관계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광주방송의 주식을 39.59% 보유하고 있으나, 2021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기업집단을 대기업으로 지정함에 따라 (주)호반건설은 방송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주)삼라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울산방송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으나 2021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M 기업집단을 대기업으로 지정함에 따라 (주)삼라는 방송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피심인 의견입니다. (주)호반건설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와 위반사항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주)광주방송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해 줄 것과 최대액출자자 변경 승인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방송법 위반 사항 시정기간을 넉넉히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삼라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와 위반 사항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국가경제 발전상황을 고려한 10조원 기준 상향, 방송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유제한 관련 규제개선, 시정명령 유예 등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처리방안입니다. (주)호반건설은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주)광주방송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은 (주)광주방송의 최대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처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유예하고, 변경 승인이 불허될 경우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주)삼라는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7월 중 조속히 (주)삼라의 시정명령을 통보하겠습니다. <붙임>으로 피심인 제출 의견서와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보고에 따르면 (주)호반건설은 원인행위를 해소하고 있는 중인데 (주)삼라는 해소할 의사가 없는 모양이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실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삼라에서 해소할 의사가 없다기보다도 해소할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마땅히 매수하려고 하는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니까 30%의 지분을 10% 이하로 낮출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주)삼라의 기업을 분할할 의사 중 어느 쪽입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10%만 남기고 팔겠다는 의사는 아니고, 최대주주 주식 전체를 팔려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데 매수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공식적인 제출의견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난번에 네이버가 종편3사의 미디어랩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역시 방송법에 따른 지금 바로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주식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의결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명령을 내렸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방송법이 10조원 제한을 둔 입법의 취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한 언론사가 과도하게 방송과 신문 시장을 장악해서 여론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재벌기업, 또는

대기업집단이 여론시장에 들어와서 여론 형성을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들이 처음에는 3조원이었다가 2008년에 10조원으로 올렸지요. 그런데 그때의 기업 환경과 지금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의 기업환경은 많이 달라졌고, 우선 국가 경제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2008년 당시 10조원 이상이 17개였는데 현재는 40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변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10조원이라는 것을, 지금 이 조치는 현행법에 따라서 저희 방통위가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조치이지만 방통위가 이 문제, 10조원 제한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이 조치와 함께, 이 조치는 절차에 따라서 방통위가 해야 할 조치이고, 따라서 저는 이 조치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조치를 하고 난 후 사무처나 방통위가 10조원 제한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잠시 말씀드리면 법의 취지는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방법상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완화에 달라는 주장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유경영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같이 이번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 과연 일각에서는 금액으로 하지 말고 재계순위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방식대로 갈 것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실제로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토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런데 올해 12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면 우리나라 GDP 0.5%에 연동되어서 대기업 기준에 대해 법 적용에 유연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GDP 0.5%에 연동되어서 좀 더 유연성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자산총액 10조원 규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서 개선 내지 개정할 것인지, 이것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겠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크게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DP 2,000조원 기준 할 때 0.5%면 10조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과의 사적 유용이라든지 자본에 의한 방송 편향을 막기 위한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우리 경제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원안은 현행법상으로는 소유제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어찌 됐든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가 뭔가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주)삼라는 대기업 집단이 방송사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한 입법취지와 타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12월 31일까지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는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이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몇 가지 사항들은 가장 강력한 사전규제인 소유규제의 적합성,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도 해야겠지만 논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들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층 민원실에서 확진

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전원 퇴청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리핑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자들도 퇴청해야 할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도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그것은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폐회】